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4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 제86조제4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적용 요건 및 감액률(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우정사업본부장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적용 요건 및 감액률

1.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가. 한 파렛트(pallet)에 적재되는 중량·규격이 같은 16면 이상(표지 포함)의 책자 형태로서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 기능, 특성 등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인쇄한 일반 통상우편물

1) 상품안내서(카탈로그) 한 면의 크기는 최소 190㎜×120㎜ 이상, 최대 255㎜×350㎜ 이하, 두께는 20㎜ 이하

2)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중 최대·최소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물이 전지면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책자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물은 8매까지 인정한다.

4)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1통(개)의 총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규격을 벗어나는 내용물이 규격 내용물의 무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봉함된 우편물 전체의 내용은 광고가 80% 이상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우편요금 적용요건

가. 우편물 발송 계약 체결

1) 계약 당사자: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발행인

2) 계약을 체결할 우체국: 우편집중국

3) 계약 기간

가)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 종료 30일전까지 사전 서면 통보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나) 계약 당사자는 계약 기간 중 1회 평균 발송 물량 이상을 정기적으로 1년에 4회 이상 발송 하여야 한다.

4) 우편집중국은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소속 지방우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발송 계약서

6) 계약의 주요내용

가) 계약 기간, 평균 발송 물량, 접수 우편집중국

나) 계약 내용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 등

7) 계약 내용의 변경 신고

가) 계약 기간과 평균 발송 물량을 제외한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은 발송일 10일 이전까지 계약 체결 우편집중국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가) 매분기 익월 평가를 통하여 분기 평균 발송물량이 계약서에 명시된 평균 발송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나) 계약 내용의 변경 신고를 연간 3회 이상 태만히 한 경우

다) 우편물 발송 이후에 고시한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9) 계약 해지 후 재계약의 제한

가) 계약이 해지된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경과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평균 발송 우편물수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계약 체결 우편집중국에 담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0) 재계약 당사자의 손해 배상

가) '9)'의 단서 조항에 의거 재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8)'의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나. 우편물을 접수할 우체국

1) 계약 체결 우편집중국을 포함한 전국 우편집중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 발송 우편물수

1) 상품안내서(카탈로그)의 월별 또는 분기별 평균 발송물량은 계약 당사자와 계약 우편집중국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1회 최소 발송 우편물수는 5만통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평균 발송물량은 나누어 발송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분할된 물량은 최소 5만통 이상이어야 한다.

3) 다만, 1회 최소 발송 우편물수인 5만통 이상을 월 1회 이상 발송한 실적이 있는 계약 당사자에 한하여 5만통 이하로 3회까지 접수할 수 있다.

라. 우편번호 구분

1) 우편번호 앞에서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우편번호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거나 배달국별로 묶어서 제출할 수 있다.

마. 우편물 제출형태

1) 묶음 제출

가) 묶음 1개의 두께는 30㎝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 행선지에 여러 개의 묶음을 보낼 때의 자투리우편물이 30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통 이내로 할 수 있다.

나)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다) 각 묶음에는 행선지 우편번호가 기재된 표지가 잘 보이도록 앞·뒤에 끼워야 한다.

2) 묶음 처리된 우편물의 파렛트(pallet)(우정사업본부장 지정 파렛트(pallet)) 제출

가) 파렛트(pallet)에는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적재하여야 하며, 1 파렛트(pallet)당 적재량은 총 용적의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파렛트(pallet) 높이 기준)로 한다.

나) 파렛트(pallet) 적재한 후 자투리 물량도 접수 우편집중국의 요청에 따라 우편집중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각 파렛트(pallet)에는 도착 우편집중국과 우편번호 앞 3자리를 표시한 국명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우편물을 파렛트(pallet) 제출 시에는 파렛트(pallet)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가지런히 적재하여야 한다.

3)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bar code) 인쇄

가) '올바른 우편번호사용(바코드(bar code) 인쇄)'의 사용률은 95%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 체결 우편집중국에서 인증한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률 인증서'를 우편물과 함께 접수 우편집중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올바른 우편번호사용(바코드(bar code) 인쇄)' 인증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다) 사전 고객 전산자료(DB)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한 올바른 우편번호사용률을 검사하여 인증률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 올바른 우편번호(집배원별 우편번호)란 주소에 맞는 우편번호를 찾을 때, 우정사업본부가 고시하는 우편번호에서 다량배달처(아파트·빌딩·기관·회사), 번지, 리 단위 및 행정동 또는 법정동 순서로 찾아 가장 먼저 해당하는 우편번호이며, 대표동 우편번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계약 요금

가. 우편요금 감액 적용

1)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감액률은 물량, 동일지역의 배달국 관할 집중국, 기타 집중국과 타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동일지역이라 함은 접수지역과 배달지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동일지역

◇ 서울, 경기, 인천	◇ 부산, 울산, 경남	◇ 충북
◇ 대전, 충남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강원	◇ 제주

나) 타지역: 동일지역 이외의 지역

나. 감액률

1회 접수물량	동일지역		타 지역
	배달국 관할 집중국	기타 집중국	
50,000 통 미만	52%	50%	48%
50,000 통 이상	54%	52%	50%
100,000 통 이상	56%	54%	52%
200,000 통 이상	58%	56%	54%

1) '가'지역(서울·경기·인천·강원)과 '나'지역('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당지역에서 타지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대전우편집중국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지역 감액률을 적용한다.

2) 1회 접수물량에 대한 감액률은 접수 우편집중국에서 각각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35호(2013. 7. 5.)는 폐지한다.